

문서번호	BSKS-1-1-15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1/5

2012.02.01.제정 2014.02.01.개정 2016.12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0.06.19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2022.12.20.개정 소관부서 교무처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학칙 제45조에 의거하여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대상)**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.20미만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. <개정 2016.12.01>
- 제3조(시기) 학사경고는 매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후에 실시한다
- 제4조(특별지도) ① 교과목 담당교수, 해당지도교수 및 학과장은 해당 수업의 결석일수가 2주이상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'예비학사경고자'로 분류하여 조기경보체계에 따라 안내 및 상담 등을 실시하여야한다. 예비학사경고자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은 예비학사경고자 상담 결과 보고서[별지서식 1호]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, 유선, 구두, E-mail, 전자출결시스템의 알림 기능 등을 통하여 출석을 독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6.19.> ② 해당지도교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및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6.19.>
- **제5조(조치)** ① 재학 중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유급처리 할 수 있다.<개정 2019.07.16.>
  - ② 유급된 자의 기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미 취득학점은 이수하여야 한다.
  -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본인과 보호자, 그리고 해당학과 지도교수에게 유선, E-mail, 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한다. <개정 2020.06.19.>
  - ④ 삭제 <개정 2016.12.01>
  - ⑤ 학사경고를 받은 자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은 학사경고자에 대하여 유선, 대면, E-mail 등의 방법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학사경고자 상담결과 보고서[별지 서식 1호]를 소정의 기한 내에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은 학사경고자를 교내에서 주관하는 학업증진 프로그램 및 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. <신설 2020.06.19.><개정 2020.09.25.>
  - ⑥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지도교수는 개강 이후 4주 이내에 학사경고자에 대하여 후속 상담을 실시하고, 학사경고자 상담결과 보고서[별지 서식 2호]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06.19.><개정 2020.09.25.>



문서번호	BSKS-1-1-15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2/5

제6조(상벌) ① 예비학사경고자에 대한 특별지도나 학사경고자 상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회 시 '주의' 조치, 3회 시 '경고' 조치, 4회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규정과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. 단, 미이행 누적기간은 교원의 임용기간으로 한다.<신설 2022.12.20.>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5.12.24.)에 의하여 『산학·취업처』를 『산학 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15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3/5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1-1-15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4/5

[별지 서식 1호] - <신설 2020.06.19.> <개정 2020.09.25.>

# 예비학사경고자상담결과보고서

연번	학번	성명	일시	상담내용	상담결과	지도교수 서명

위와 같이 0000학년도 0학기 예비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결과를 제출합니다.

00.00.000

지도교수	•	( o)	ı `

학 과 장: (인)

부산경상대학교 교무처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1-1-15
제정일자	2012.02.01.
최종개정일자	2022.12.20.
페이지 수	5/5

[별지 서식 2호] - <신설 2020.06.19.><개정 2020.09.25.>

# 학사경고자상담결과보고서

연번	학번	성명	일시	상담내용	지도교수 서명

위와 같이 0000학년도 0학기 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결과를 제출합니다.

00.00.000

지도교수	•	( (0)	

학 과 장: (인)

부산경상대학교 교무처장 귀하